

2026학년도 군남초중학교 CCTV 운영계획서



2026. 3.

군남초중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을 ‘군남초중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 및 운영 규정’이라 부른다.

제2조(목적)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꾀하고 학교 구성원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① ‘CCTV’라 함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을 특정인이 수신할 수 있는 장치로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 ②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③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제2장 CCTV의 설치 및 준수사항

제4조(설치의 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CCTV 설치·운영 지침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남초중학교의 시설물 보호, 학교폭력 및 범죄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책임관 및 담당부서 지정)

- ① 최고 책임관은 학교장으로 하며, 부책임관은 교감(초등, 중등), 담당부서는 초,중 학생안전부(☎ 031-833-8260), 시설 관리는 행정실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책임관은 당해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와 개인영상정보 운영담당자는 다음과 같다.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영상정보 운영담당자		
분야별책임자	김OO	담당자	초등	최OO
			중등	이OO
				남OO
전 화	031) 833-8260	전 화	031) 833-8260	

제6조(카메라설치 현황) 학교 내에 설치된 CCTV 카메라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번	위 치	대수	성능 (화소수)	촬영범위	촬영 시간	보관기간	비고
1	행정실동 벽면	1	200만	운동장	연중	30일	야간촬영 가능
2	초등학교동 현관앞 차량막쪽	1	200만	초등학교 정문앞 놀이터 주변 들어오는 입구	연중	30일	야간촬영 가능
3	유치원 건물 벽면 놀이터 방향	1	200만	유치원 놀이터 주변	연중	30일	야간 촬영 가능
4	중학교동 엘리베이터	1	200만	엘리베이터 내부	연중	30일	야간촬영 가능
5	체육관 벽면	1	200만	버스 차고지 주변	연중	30일	야간 촬영 가능
6	초등학교동 출입구	1	200만	초등학교 건물 출입구 주위	연중	30일	야간 촬영 가능
7	교직원사택 입구	1	200만	교직원 사택 출입구	연중	30일	야간 촬영 가능
8	중학교 건물 영어교실 위	1	200만	사택 및 중등 건물 뒤편 주차장	연중	30일	야간 촬영 가능
9	중학교 건물 중앙 출구	1	200만	중학교 건물 중앙 출구 진입로	연중	30일	야간 촬영 가능
10	전산실(성적처리실)	1	200만	전산실(성적처리실)	연중	30일	야간촬영 가능
11	체육관 정문 위	1	200만	교문 및 체육관 앞	연중	30일	야간 촬영 가능
12	초등학교동 엘리베이터	1	200만	엘리베이터 내부	연중	30일	야간촬영 가능
13	중학교 건물 시정각실 쪽 벽면	1	200만	쓰레기 분리장 및 건물 위쪽 출입구	연중	30일	야간 촬영 가능
14	중학교 건물 급식실 위	1	200만	사택 및 중등 건물 뒤편 주차장	연중	30일	야간 촬영 가능
15	유치원 건물 출입구	1	200만	유치원 진입로	연중	30일	야간 촬영 가능
16	유치원 건물쪽 운동장 스탠드차양막 위	1	200만	운동장	연중	30일	야간 촬영 가능
17	초등학교쪽 후문	1	200만	초등학교쪽 후문	연중	30일	야간 촬영 가능
18	회의실 (민원면담실, 학교운영위원회실)	1	200만	회의실 (학교운영위원회실)	연중	30일	야간 촬영 가능
19	중등 1층 특수교실 복도 앞	1	200만	중앙 복도	연중	30일	야간 촬영 가능
20	중학교 1층 복도 교실방향	1	200만	1층 복도	연중	30일	야간 촬영 가능
21	중학교 2층 중앙 복도(서향)	1	200만	2층 복도	연중	30일	야간 촬영 가능
22	중학교 2층 중앙 복도(동향)	1	200만	2층 복도	연중	30일	야간 촬영 가능

- 확인장소 : 군남초등학교 속직실(통제구역)

제7조(촬영 범위의 제한) 고정식 카메라로 촬영범위는 반경 50m 이내이다.

제8조(안내판 부착)

- ① 군남초중학교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 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제 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CCTV설치의 목적
 2. 촬영범위 및 시간
 3.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 ③ 제 1항에 따른 안내판은 안내문으로 하여 정문 게시판에 부착한다.

제9조(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 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① 정보주체는 군남초중학교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군남초중학교장은 제 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제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포함) 하여야 한다.
 1. 범죄조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 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0조(촬영시간) CCTV촬영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제11조(화상정보의 보유기간)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촬영된 이후 화상정보가 자동 삭제될 때까지(30일정도)의 기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정보를 따로 복사하여 보관할 수 없다.

제12조(화상정보의 보관, 관리, 삭제의 방법)

- ①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숙직실 디지털 녹화기 서버의 메모리로 한다.
- ②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와 운영담당자, 및 실시간 모니터링 담당자(숙직실 근무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 ③ 관리책임자는 CCTV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점검 기록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④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하여야 한다.

- ⑤ 화상정보의 삭제는 숙직실에 설치된 디지털 녹화기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도록 한다.

제13조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를 숙직실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관계자)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제 3장 화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

제14조(화상정보 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 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5조(열람 등의 요청)

- ① 정보주체는 군남초중학교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 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③ 제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 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남초중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보호)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 한다.

1.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118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3.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부 칙>

1. 이 규정은 2018년 8월 21일 개정하고 즉시 효력을 갖는다.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19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20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4.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22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23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6.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25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7.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25년 10월 28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붙임1] CCTV 운영·관리 기록부

CCTV 운영 . 관리 기록부

20 년 월 일 (요일)

결 재	담	당	부	장

◎ CCTV 점검<별지 1호>

구 분	내 용	결 과 정상○ 불량× 정비△	고장 / 정비 내용	비 고
CCTV 카메라	영상표출 상태			
	작동(줌, 회전) 상태			
	기능 설정 상태			
	외관, 설치 상태			
	전원공급 상태			
CCTV 제어부	프리셋 연동상태			
녹화 장치 (DVR)	영상녹화 상태			
	영상기록물 보유 상태			
	기능 설정 상태			
	외관, 설치 상태			
	전원공급 상태			
※ 영상기록물 보유기간은 DVR 저장량 한도내.				

